

서식 제3호 (제12조 관련)

()보증채무약정서
(개별거래용)

자본재공제조합 작성란		
인감대조	담당	부서장
약정일자 : 년 월 일		

자본재공제조합 귀중

약정인은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귀 조합으로부터 귀 조합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()보증을 받는데 따르는 채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조합원연대보증인, 개인자격연대보증인, 제3자연대보증인 및 제3자 담보제공자(이하 “연대보증인”이라 한다)는 약정인의 채무를 약정인과 연대하여 귀 조합에 이행할 것을 확약함.

약정인	주 소 :		
	상 호 :		
	대표자:	(인)	
약정인의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	주 소 :	성 명 :	(인)
	주 소 :	성 명 :	(인)
	주 소 :	성 명 :	(인)
연 대 보 증 인			
주 소	주 소		
상 호	성 명	(인)	
대표자			
주 소	주 소		
상 호	성 명	(인)	
대표자			
주 소	주 소		
상 호	성 명	(인)	
대표자			

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.

제1조(보증내용)

보증금액	금	원정
계약금액		
계약(기계류)명		
보증채권자(수요자)		

제2조(보증기간) ①보증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함. 다만, 발급받은 보증서 등의 보증기한이 경과할지라도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며, 조합이 약정인의 요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보증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.

제3조(의무이행) 귀 조합으로부터 보증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약정인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제반의무, 관계법령 등에 의한 의무 및 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대하여 귀 조합에는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겠음.

제4조(배상의무 등) ①귀 조합이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금을 지체없이 귀 조합에 배상하겠으며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귀 조합이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를 지급하겠음.

②귀 조합에서 지급한 체당금,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, 소송비용, 보험료, 추심료 및 수수료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귀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음.

제5조(담보제공) ①약정인 및 조합원 연대보증인은 약정금액에 상응하는 출자증권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물을, 제3자담보제공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담보물을 귀 조합에 제공하겠으며 동 담보는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·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귀 조합에서 취득 또는 처분하고, 그 취득금 또는 처분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1조에 준하여 주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.

②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담보물의 이자, 배당금 등 과실에 대하여도 담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제공된 담보물 중 액면금액란·발행일란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귀 조합에 대한 채무에 따라 액면금액란·발행일란 등을 보충할 권리를 귀 조합에 부여하겠음.

③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이미 제공하였거나 앞으로 제공하는 모든 담보는 그 담보하는 채무외에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조합으로부터 보증받는데 따르는 약정인의 채무에 대하여 공통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3자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담보는 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만 담보하는 것으로 함.

④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 부족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변제능력이 변동되어 조합이 담보의 교체,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의 교체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에 따르기로 함.

제6조(보증수수료) ①귀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보증에 대한 소정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보증서의 발급 신청과

동시에 납부하겠음.

② 귀 조합의 보증책임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1항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겠음.

제7조(한도초과예치금) 약정인에 대한 귀 조합의 보증한도 초과로 인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한 담보로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받는데 대하여는 그 금리를 청구하지 아니하겠음.

제8조(통지 및 신고의무)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하겠으며, 조합의 요청이 있거나 제출서류의 내용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제출하겠음.

1. 보증채권자 등으로부터 조합이 보증한 사항에 관련되는 의무이행청구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

2. 보증채권자와 약정인 사이의 계약사항 변경 또는 해약 등 이 약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 또는 해소된 때

3. 인감·상호·대표자·주소 또는 기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

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겠음.

제9조(면책사항) ① 약정서, 보증 등의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이에 사용한 인장은 상당한 주의로서 정당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 서류 및 인장의 도용·위조·변조 또는 기타 사고가 있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하고 하등의 이의없이 이 약정상의 책임을 지겠음.

② 연대보증인의 약정체결 당시 구비서류에 의하여 귀 조합이 정한 약정인의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체결 이후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의없이 이 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겠음.

제10조(사전구상) ①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최고 등이 없어도 귀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하겠으며, 귀 조합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.

1. 귀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또는 기타재산에 압류·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처분 등으로 조합채권보전에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

2.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

3.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, 화의개시,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,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또는 경매 등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

4.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보증사고발생, 보증금지급통고 등으로 조합채권보전에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

5. 제3조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

6. 기타 조합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조합원자격의 상실,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 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

②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 등에 의하여 귀 조합에 대한 모든 채

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하겠으며, 귀 조합이 미리 구상권을 행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.

1. 귀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등 약정서 내용을 위배하여 건전한 계약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
2.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
3. 자연인이 이민, 해외취업 및 국외파견근무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때
4. 기타 조합 정관 및 규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11조(변제 등의 충당순서)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나 제5조에 의하여 조합에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상계 또는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비용 · 이자 ·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며, 만일 약정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은 즉시 추가로 변제하겠음.

제12조(연대보증인의 책임) ①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약정인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.
②이 약정기한의 경과 후에 납품 및 시운전완료 기일의 연장 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이 약정서에 의하여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기한을 약정인 또는 보증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하거나(추가보증서발급 포함) 보증채권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지겠음.
③공동도급계약의 경우 약정인이 공동수급을 받고자 하거나 공동수급받은 실제 비율에 의한 금액에 불구하고 약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귀 조합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지겠음.
④조합이 한도초과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인의 약정보증한도에 여유가 발생하여 그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도내보증으로 전환처리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지겠음.

제13조(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) 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약정서에 의하여 귀 조합이 취득한 신용정보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.

제14조(합의관할) 이 약정서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귀 조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함. 다만,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음.